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태천의원)

의안 번호	2409
----------	------

제출년월일 : 2013. 6. 13.
발 의 자 : 윤태천의원

□ 제정이유

-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태풍, 폭우 등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입은 피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 및 지원이 되지 않는 일정기준 이하의 농어업용 시설 및 농작물 등 피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농어민에게 다소나마 생계안정 도모와 영농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 함(안 제1조 ~ 제2조)
- 시장의 책무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의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한 지원 제외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 운영자의 책무사항 및 피해발생 신고 등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농어업재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수 산정에 관한 사항과 복구비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지원금 결정통지, 환수, 관련대장의 비치·관리,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제11조)

□ 제정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불임 2의 재난복구비용 지원 등 예산안 참고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관내에서의 농어업재해 발생에 따른 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농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 중 한해·수해·풍해·냉해·우박·서리·설해·동해·병충해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어업용 시설·농경지·농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 2.“어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 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그 밖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
- 3.“농업용 시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4.“어업용 시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5.“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 6.“농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7.“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안산시 관내에서 농어업재해에 의하여 직접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8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복구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제외)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작물 경작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농어업외 소득이 해당 농어가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4. 피해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안산시 이외에 지역에 거주하는 자
5.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영농 또는 어업활동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어업용 시설이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6.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보조 또는 지원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7. 그 밖에 해양수산부가 정하지 않은 어망·어구 및 시가 보조 및 지원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운영자의 책무) ① 농어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농지 소재지 관할 동장 및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동장 및 담당부서장은 피해지역 통장, 피해농어가 및 어촌계장 입회하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동장 및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보완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① 재난지수 산정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피해방지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

- ② 지원금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 유공자
2. 장애인 및 노약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지원금 결정통지) 시장은 지원금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해당 농어업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대장의 비치·관리) 시장은 농어업재해로 인한 복구비 지원신청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재난지수별 복구비 지원금 기준표

재 난 지 수	복구비지원금(원)
200이상 ~ 300미만	300,000
100이상 ~ 200미만	200,000
100미만	지원제외

〈불임 2〉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 및 관련조문

-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대상)

나. 비용발생 요인

- 농어업 재해 피해 발생시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300미만인 경미한 피해의 재난지원금

2. 세부비용 추계(5년)

(단위 : 천원)

구 분	연도별	'13	'14	'15	'16	'17	비 고
농어업재난지원금		35,000	40,000	45,000	50,000	55,000	

※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이 증가추세이며, 조례 제정시 농어업재해 피해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은 전체적으로 확대 전망됨

비용 추계 산출기준 내역

단위 : 호, 천원

연도별	농어업 재해내역	재난지원금 제외농가수	금 액	연평균 금액
계		370	92,500	18,500
2008	태풍(갈매기)	25	6,250	
2009	집중호우	15	3,750	
2010	태풍(곤파스)	113	28,250	
2011	저온피해	131	32,750	
2012	태풍(볼라벤)	86	21,500	

※ 금액은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의 별표(재난지수별 복구비 지원기준표) 평균금액(250,000원)을 농가수에 곱한 금액임